

## 경운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숭선학원 정관에서 규정된 경운대학교 일반직원(일반직, 기술직)의 정원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일반직 직원의 정원)** 학사행정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직 직원의 정원으로 한다.

구분	정원	비고
일반직계	60명	
3급(부이사관)	1	
4급(서기관)	1	
5급(사무관)	5	
6급(주사)	13	
7급(주사보)	22	
8급(서기)	10	
9급(서기보)	8	

**제3조(기술직 직원의 정원)** 학사행정의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직 직원의 정원으로 한다.

구분	정원	비고
기술직계	13명	
5급(사무관)	1	
6급(주사)	1	
7급(주사보)	7	
8급(서기)	2	
9급(서기보)	2	

**제4조(관리부서)** ① 일반직원의 정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.

②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과 기술직간 전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